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교육부 등 15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를 실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38건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비규제로 분류된 과태료 부과·징수 건 등 13건은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사의 교육관련 규정 등 12건에 대해 제도의 안정화 상황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재검토 주기를 변경하는 등 총 43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26. ~ 2025. 1. 6.) 예정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광산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4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로 하여 5년마다(매”를 “기준으로 매”로,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를 “기준으로 매”로,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제5조(「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제7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8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9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1항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

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3조(「선원법 시행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14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제15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률 시행령」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2015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제18조(「온천법 시행령」의 개정)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4.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2015년 1

월 1일

제19조(「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21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료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가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

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제23조(「자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2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제2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제26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2017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제27조(「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중 “2015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제28조(「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제31조(「진로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3조(「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34조(「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4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을 삭제한다.

제38조 (「행정사법 시행령」의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중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제39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40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를 “매”로,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41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제42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제6호를 삭제한다.

제43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조”를 “제9조”로,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및 공동계약체결의 사유:”를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1. 제3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취소 요건 및 변경신고 사유: 2022년 1월 1일	<삭 제>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 ----- ----- ----- ----- ----- ----- -----.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4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u>매 2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마다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마다 ----- ----- -----.
1. ~ 3의5. (생략)	1. ~ 3의5. (현행과 같음)
4. <u>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방법: 2016년 1월 1일</u>	<삭 제>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광산안전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제22조와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 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 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u>기준일로 하여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대기 <u>관리권역: 2020년 1월 1일</u> 2.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u>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생략)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u>기</u> <u>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마다 ----- -----. <u><삭 제></u> 2. (현행과 같음) ② ----- ----- ----- <u>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u> <u>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u> <u>를 말한다)</u> 마다 ----- ----- -----. 1. ~ 3. (현행과 같음)

대외무역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1. <u>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한 무역 지원 대상이 되는 무역 관련 시설의 기준: 2015년 1월 1일</u> 2. <u>제43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2015년 1월 1일</u> 3. <u>제4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사항 및 보고기간: 2015년 1월 1일</u> 4. <u>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사항 및 절차: 2015년 1월 1일</u>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2조(규제의 재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2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 2022년 1월 1일	<삭제>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u>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 -----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 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 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항목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제4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 등: 2016년 1월 1일</u> <u>2. 삭제</u> <u>3. 제43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2016년 1월 1일</u>	<u><삭 제></u>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 ----- -----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u>마다</u> ----- -----.
1. 제11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에 두는 학위의 종류: 2016년 1월 1일	<u><삭 제></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자격: 2016년 1월 1일	<u><삭 제></u>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변리사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제1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삭 제></u>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3조(규제의 재검토) ----- ----- -----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u>마다</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8조의3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 또는 폐지의 신고절차: 2022년 1월 1일</u>	<u><삭 제></u>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u>마다</u>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u>매 2년</u> <u>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7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u><삭 제></u>

선원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 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미성년 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에 대하 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 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 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 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에 대하여 <u>2021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 ----- ----- ----- <u>2025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 한다)마다</u>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u>마다</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11. 삭제	
12.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2015년 1월 1일	<삭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날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규제의 재검토) ----- ----- -----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u>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제1항 및 별표 13에 따 른 <u>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범 위: 2018년 1월 18일</u>	<u><삭 제></u>
5. 제28조제3항 및 별표 9에 따 른 <u>성능평가의 실시범위: 2018 년 1월 18일</u>	<u><삭 제></u>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에 대하여 <u>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u>2025년 1월 1일</u>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마다 -- ----- -----.

온천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생략) 2.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u>2015년 1월 1일</u>	② ----- ----- -----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마다 ----- ----- -----.
1. 제20조에 따른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 대상: <u>2022년 1월 1일</u>	<u><삭 제></u>
2. 제21조에 따른 유치원 평가의 기준: <u>2022년 1월 1일</u>	<u><삭 제></u>
3.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평가의 방법·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u>2022년 1월 1일</u>	<u><삭 제></u>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은행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검영 <u>업무의 범위: 2022년 1월 1일</u> 2.·3. (생략)	제30조(규제의 재검토) ----- ----- -----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u>마다</u> ----- -----. <u><삭 제></u> 2.·3. (현행과 같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의료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매 3년째가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대하여 <u>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u>2025년 1월 1일</u> -----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자격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u> <u>은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정책</u> <u>관련 실태조사에 대하여 2022년</u> <u>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u> <u>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u> <u>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u> <u>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u> <u>해야 한다.</u>	<u><삭 제></u>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1.·2. 삭제	
3. ~ 25. (생략)	3. ~ 25.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 -----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삭제	
14. 제239조에 따른 투자익명조 <u>합계약의 기재사항: 2015년 1 월 1일</u>	<삭제>

15. 삭 제	
16. ~ 32. (생 략)	16. ~ 32. (현행과 같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u>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 ----- ----- <u>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u>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u>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u>기준일</u> <u>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u> ----- ----- -----.
1. 제84조의5에 따른 가입대상 시설: <u>2017년 1월 1일</u>	1. ----- --- <u>2025년 1월 1일</u>
2. 제84조의6제1항에 따른 보상 한도액: <u>2017년 1월 1일</u>	2. ----- ----- <u>2025년 1월 1일</u>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 <u>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u>2025년 1월 1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u>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 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u>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31조의3에 따른 지능형로 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2015 년 1월 1일</u>	<u><삭 제></u>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 준일을 기준으로 <u>5년마다(매 5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u>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u> ----- ----- -----.
1.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 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절차,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 2020년 1월 1일	<삭 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2년마 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u>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u> ----- ----- -----.
1. 제9조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 2015년 1월 1일	<삭 제>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u>4.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u>	<u><삭 제></u>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 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 하여 <u>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u> <u>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u> <u>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u> <u>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u> <u>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 ----- ----- ---- <u>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u> <u>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u> <u>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u>마다</u> ----- -----.

진로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삭 제></u>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u> <u>관광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콘</u> <u>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에 대</u> <u>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u> <u>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u> <u>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u> <u>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u> <u>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삭 제></u>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1. 제2조제2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시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u> <u>2.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습비의 반환 사유: 2022년 1월 1일</u>	<u><삭 제></u>

평생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1. ~ 7의3. (생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7의4. 제47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절차: 2016년 1월 1일	<삭제>
8. ~ 18. (생략)	8. ~ 18.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 -----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2. 제49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2015년 1	<삭제>

<u>월 1일</u> 3. ~ 5. (생 략) <u>6. 제58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u> <u>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u> <u>2015년 1월 1일</u> <u>7. 제59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u> <u>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u> <u>편입학 등: 2015년 1월 1일</u> 8.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8. (현행과 같음)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마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u>2022년 1월 1일</u>	<u><삭 제></u>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마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7조의5에 따른 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u> <u>2022년 1월 1일</u>	<u><삭 제></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u>제18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금지 대상품목·제한방법·제한기간등: 2022년 1월 1일</u>	<u><삭 제></u>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삭 제></u>

행정사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행정사의 교육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u>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u>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u>마다</u>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삭 제></u>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마다 ----- -----.
1.·2. 삭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22조의7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u>	<u><삭제></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u>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의3에 따른 측정대행 계약관리기관의 지정: 2022년 1월 1일	<삭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u>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 ----- ----- ---- <u>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u>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5. (생략) 6. 제11조 및 별표 9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의 종류: 2022년 1월 1일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u> 마다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및 <u>공동계약체결의 사유: 2022년 1월 1일</u>	2.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 -----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 2022년 1월 1일
3. 제29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6175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14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2253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5541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2279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6391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2) 2100 - 6094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4817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5166

소방청 혁신행정부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251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695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5723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부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4261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2100 - 28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2) 2100 - 2473